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68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슬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3.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110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다음과 같이 B의 각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장기한)	대출일자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보증	2013. 9. 27.	90,000,000	2014. 9. 26. (2023. 9. 15.)	2013. 9. 30.	C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
2차보증	2020. 5. 27.	9,500,000	2025. 5. 27.	2020. 5. 27.	D은행	소상공인대출	10,000,000
3차보증	2021. 6. 30.	9,500,000	2026. 6. 30.	2021. 6. 30.	C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
4차보증	2022. 9. 8.	90,000,000	2023. 9. 7.	2022. 9. 16.	C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0,000,000

나. B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은행들로부터 위 각 대출금을 대출받았다.

다. B는 2023. 3. 21.경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23. 6. 15. 최종 부실처리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24. 2. 22. 대출은행인 C은행 및 D은행에게 합계 178,491,8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1,335,560원, 채권보전비용 1,449,273원이 발생하였다.

라. B는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E 광명점을 운영하다가 2023. 1.경부터 E 포천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B와 F는 2023. 3.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11055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수개월 후에 원고가 대출은행들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국세 관련 과태료 등의 추징 상황은 인지하였으나 해결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B의 매월 외상매출금의 입금을 유예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기초해서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별지